

중·고령층 여성의 노부모 수발과 경제활동참여

최 영⁺

(중앙대학교)

심 경 수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 2,125 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고령층 여성, 경제활동 참여, 취업 여부, 부모 수발, 노인 부양

1. 서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다방

+ 주저자

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적인 정의의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75세 혹은 85세처럼 연령대별로 노인의 상이한 욕구를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체적 약화, 정서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07). 즉, 신체적인 노화 과정의 결과로 각종 만성 질병을 비롯한 신체적 기능성의 저하는 노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감정 혹은 정서의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인구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쾌함에 더욱 지배를 받기 마련이어서 우울증 혹은 다른 정신적 혹은 정서적 고통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cInnis-Dittrich, 2005).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인구에게 가장 생생한 과거, 즉 50~60대 개인적인 삶에 대한 만족은 향후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년기 혹은 중·고령기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경험하고 노년기로 접어드는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령기에 개인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노년기를 대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80세 이상의 초고령기는 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나, 중·고령기에서 초고령기로의 진입이 수월치 않거나 예정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평균 연령 80세에 육박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노년기를 원활히 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고령기의 삶에 대한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고령층 여성의 생애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서미경, 2012)에 따르면, 중·고령층 여성은 “노부모와 미독립 자녀를 부양하는 낡은 세대”로 일과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생애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들은 남과 더불어 베풀고 살며 독립적 노후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안정적인 경제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에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지연·신현구, 2008).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40대 중반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까지 퇴직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나타나고 있어(윤지은·전혜정, 2009; 라진구, 2009),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중·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손정현·이영민,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0년에는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김미경·주재선, 2002), 이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을 원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송다영·김미경, 2003).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본 유희화가 심각한 여성, 특히 기혼여성 및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김지경·조유현, 2001; 성지미·차은영, 2004; 서병선·임찬영, 2004; 최은영, 2011).

이와 같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계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교육, 건강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인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 등과 같은 생애주기의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 중 특히 부모 부양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일정부분 제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ber and Ginn, 1990; Henz, 2004; Berecki-Gisolf et al., 2008). 예를 들면,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35세부터 육아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나, 45세에 이후 점차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데(김미경·주재선, 2002; 성지미·안주엽, 2006), 이는 생애주기상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국내연구의 경우 기술분석을 통해 중·고령층의 노인 부양 부담과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에 대한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송다영과 김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여성 수발자의 경우 9.5%, 남자 수발자의 경우 4.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 외, 2006)의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에서도, 노인 돌봄으로 인해 취업자 중 52.7%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을 바꾸는 등 경제활동 참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 노동시장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추출한 다양한 변인들 중 (재)취업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김학주·우경숙, 2004; 성지미·안주엽, 2006; 엄동욱, 2008; 손정현·이영민, 2011)나 이에 노동시장정책이나 연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국가 간 비교연구(장지연·신현구, 2008; 주은선·박진화, 2010; 김수완, 2012) 중심으로 이루어져와 중·고령층의 생애주기별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외생적 제한점 중 하나인 부모에 대한 수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노후보장패널(KLeLS)』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와 노인수발부담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활동 및 이상실현에서도 상당한 함의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통해 노인 및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책 및 실천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중·고령층의 개념

중·고령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의 경우 65세 이상을 고령자 또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령층의 연령층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민경, 2004)

실제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을 중·고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학주와 우경숙(2004), 윤지은과 전해정(2009), 신현구(2008) 등은 45세에서 부터 64세까지 또는 그 이상을, 이성용과 방하남(2009), 엄동욱(2008), 그리고 성지미와 안주엽(2006)은 50세 이상에서 만 70세 또는 75세 까지를, 또한 김수완(2012)은 55세 이상을 중·고령층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에서 70세 까지의 50~60대 연령층을 중·고령층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50~60대 연령층은 기존연구에서(장지연, 2000; 김미경·주재선, 2002; Arber and Ginn, 1990; Dahlberg et al., 2007)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상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줄어들고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후 30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린 후 40대 중·후반에 최고점을 보인 후 하락하는 이른바 M자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것은 일정부분 40대 후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시간이용이 보다 탄력적인 비정규직으로의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김미경·주재선, 2002; 이에스터, 2013) 있다.

2) 중·고령층의 노인부양과 경제활동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제공은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Arber와 Ginn(1990)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잠재적인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황에 따라 돌봄의 형태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다음과 같은 3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간 조정(Work Accomdation)'의 형태로, 돌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대한 책임감의 증가로 인해 점차적으로 근로에 투입하는 시간은 줄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어나가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개인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주된 책임을 갖는 돌봄 제공자가 고용의 기회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형태로 특히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추가적인 고용기회나 교육의 기회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돌봄의 대상자가 거동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보호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경우 돌봄 제공자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제활동 대신 부모의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Carmichael과 Charles(1998)는 부모와 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책임감으로 인한 부양의 제공이 부양 제공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부모 부양에 할애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근로시간은 감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enz(2004)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과 일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대부분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돌봄의 책임감에서 벗어난 후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추가로 근로시간을 늘이거나 하는 형태로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Green(1988)은 부모 부양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이나 고용상태를 의미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artin과 Roberts의 연구(1984)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 부양을 하는 여성의 29%는 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1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를 분석한 정경희(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의 8.2%가 수발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 4.0%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발자의 약 10%로 정도가 수발로 인한 노인 부양부담이 경제활동참여를 제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 외,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 중 62%가 노인 돌봄으로 인해 생애 근로를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취업자의 52.7%가 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상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박영란과 강순화(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 수발 여성의 26.4%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취업상태에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경우 80% 이상이 근로시간 조정이나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모 부양이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주기상으로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출산과 아동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난 후 다시 노령화된 부모를 부양할 시기인 50~60대 사이의 중·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Arber와 Ginn(1990)은 1985년 영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 센서스 자료(1985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Informal Carers Survey data)를 분석하여, 노인부양과 연령의 관계를 밝혀내었는데, 여성의 경우 60대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젊은 남성보다는 오히려 나이든 남성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Dahlberg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에 관한 변수와 함께 더불어 고려할 때, 부모 부양에 관련한 부담감 혹은 책임감은 제공자의 나이가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이를 때 최고조에 이르고, 이로 인해 중·고령에 해당하는 50대의 여성들이 노동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돌봄이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보다는 주로 가족내에서 비공식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박경숙, 2001; 박경숙, 2006)에게서 크게 나타나나, 고령의 경우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McLanahan과 Monson(1990)은 노인 돌봄의 제공은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영향은 여성 돌봄 제공자에게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001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한 Dahlberg et al. (2007)의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약 11.3%, 남성은 약 8.6%가 돌봄 제공자로 파악되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노인부양 참여가 늘어나 고령의 경우 돌봄 제공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연구로서 김미경과 주재선(2002)의 한국여성개발원의 2000년 '제 4차 여성 취업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45세에서 64세 중·고령 여성의 경우 노인과 동거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3) 기타 요인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일반 이론으로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또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노동공급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공급과 수요측 요인으로 수렴될 수 있는데, 이들 이론들 중 인적자본이론이나 노동시장분절론 등을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지어 고찰해 볼 수 있다(김학주·우경숙, 2004).

인적자본이론은 완전 경쟁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얼마나 양질이나에 초점을 맞추고, 인적자본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예로는 교육, 현장 훈련, 건강, 구직, 정보, 이직 등이 포함된다(박덕제·이원덕, 1998). 특히,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본의 하나인데, 다수의 연구들은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며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김미혜·최혜지, 2004; 손정현·이영민, 2011). 하지만, 중·고령층의 경우 교육수준은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교육수준이 중·장년기 시기의 직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고령시기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준비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노령기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성지미·안주엽, 2006). 한편, 건강의 경우 역시 잠재적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데(Herzog et al., 1991), 건강한 노동자의 경우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노동공급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재(취업)가능성을 높인다. 국내연구로 엄동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육체적 건강상태나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좋을수록 취업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성용과 방하남(2009)의 연구에서도 중·고령자의 남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적자본이론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임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은 노동의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이루는 노동시장 분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별, 교육수준, 직종, 이전 직장의 임금수준과 고용형태 등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는 학력과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병희·황덕순, 1999; 이효수·류재술, 1990). 이 중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정부분 남성은 경제적 활동에 여성은 가사활동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가족문화에 기인한다(이성용·방하남, 2009). 최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은 중·고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한 김수완(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을 연구한 성지미·안주엽(2006)에서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임금근로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한 엄동욱(2008)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연령, 소득, 배우자의 존재여부 등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사회의 규범에 따른 은퇴연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령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연금제도나 정년제도 등에 의해 은퇴연령이 조정받기 때문에 65세 전후에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장지연·신현구, 2008). 한편 소득수준의 경우 중·고령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은 기본적인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데, 특히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들이 근로를 통해 소득 확보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지연·신현구, 2008; 손정현·이영민, 2011). 한편, 배우자의 존재여부는 일반적으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는 경제적 부양책임의 증가로 이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이성용·방하남, 2009).

3.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 (KReL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실시된 1차 자료와 2007년에 실시된 2차 자료를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1, 2차 자료가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에 비해 노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샘플수가 풍부하고,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의 설문문항이 다소 변경되어 동일한 변수를 추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조사대상자 중 '부모 수발 여부' 항목에 응답한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50~60대 중·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취업여부는 취업(1) 비취업(0)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에 사용하였고, 경제활동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 후 미취업을 기준변수로 하여 다항로지분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수발여부와 수발시간의 두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수발여부는 부모님 수발 및 간병여부에 대해 수발하고 있음(1), 수발하고 있지 않음(0)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발시간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주당 부모 수발 및 간병에 사용된 시간을 주당 '28시간 이하', '29~56시간이하', '57시간이상' 등 3집단으로 구분하고 '28시간 이하'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가구특성, 경제특성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50대와 60대로 범주화한 후 50대를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 응답자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태로서 '아주 좋지 않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특성은 배우자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었는데, 배우자 여부는 배우자 있음(1), 없음(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거주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도지역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은 가계부채여부,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가계부채여부는 가계부채가

1)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또는 이직과 이에 따른 (재)취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장년층과는 다르게 상용근로자로의 취업보다는 자영업이나, 임시근로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의 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권혜자, 2012). 이에 따라 많은 중·고령자들이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신현구, 2014). 따라서,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종사상 지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있는 경우(1)와 부채가 없는 경우(0)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계총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 한 후 Log변환을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경제활동참여 상태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노부모수발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종사상지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종사상 지위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속변인이 취업여부와 같은 이항변수일 경우 일반적으로 로지스틱이나 프로빗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지만, 여기에는 각 관측사례가 독립적(independent)이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김교성, 2007; 박진욱·정민수, 2008). 본 연구의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자료와 2차 자료를 병합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위 가정을 위배하여 적절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다.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이와 같은 반복측정 종단자료나 군집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종속변수가 이항, 서열 등의 질적변수일 경우에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한 것(박진욱·정민수, 2008)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하지만,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질적변수가 다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종사상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4. 분석결과

1) 중·고령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표 1〉은 중·고령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인특성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6.9세로 나타났고, 비취업자의 평균연령이 57.29세로 취업자 평균연령 56.45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60$, $p<.001$). 이를 50대와 60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50대가 60대에 비해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4.918$, $p<.05$).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에 비해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78.647$, $p<.001$). 한편, 건강상태 중 신체적 건강상태는 대상자 평균 2.84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

준의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서는 취업자(평균 2.92)가 비취업자(평균 2.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3.378$, $p<.001$).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는 대상자 평균 3.23점으로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같이 비취업자(평균 3.23)에 비해 취업자(평균 3.24)가 건강상태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 여부의 경우 분석 대상자 중 85.2%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결혼상태를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참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5.428$, $p<.05$). 가구원수의 경우, 분석 대상자 가구는 평균 3.07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구원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절반정도가 농어촌지역인 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취업자는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취업자는 도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63.279$, $p<.001$).

한편,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57.1%가 가계에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자(62.0%)가 비취업자(52.8%)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X^2=18.559$, $p<.001$),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계총소득은 분석 대상자 평균 34,995천원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발특성을 살펴보면, 수발여부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자의 6.6%가 노부모 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7.7%, 비취업자의 5.7% 정도가 부모님 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발시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9.68시간 노부모에게 수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취업자(평균 49.82시간)가 취업자(평균 31.03시간)에 비해 많은 시간을 부모 수발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2$, $p<.01$).

2) 노부모수발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표 2>는 노부모에 대한 수발이나 간병의 제공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전체 사례를 포함한 모형 1의 경우 수발특성과 관련하여 노부모 수발여부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님을 수발하는 경우는 수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취업 가능성(odds)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71$, $p<.01$).

〈표 1〉 중·고령층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합계	통계치 X ² /t
		비취업	취업		
개인특성					
연령	50대	787	727	1514	4.918*
		69.2%	73.6%	71.2%	
	60대	350	261	611	
		30.8%	26.4%	28.8%	
연령(평균, SD)		57.29(5.10)	56.45(5.03)	56.9(5.08)	3.860***
교육수준	무학	63	87	150	78.647***
		5.6%	8.8%	7.1%	
	초등학교졸업	344	450	794	
		30.3%	45.5%	37.3%	
	중학교졸업	286	209	495	
	25.2%	21.2%	23.3%		
	고졸이상	442	242	684	
		38.9%	24.5%	32.2%	
신체적 건강상태(평균, SD)		2.77(1.08)	2.92(.95)	2.84(1.02)	-3.378**
심리적 건강상태(평균, SD)		3.23(.98)	3.24(.92)	3.23(.95)	-.592
가구특성					
배우자여부	없음	149	165	314	5.428*
		13.1%	16.7%	14.8%	
	있음	988	823	1811	
		86.9%	83.3%	85.2%	
가구원수		3.08(1.19)	3.06(1.23)	3.07(1.21)	.362
거주지역	서울	336	181	517	63.279***
		29.6%	18.3%	24.3%	
	광역시	328	231	559	
		28.8%	23.4%	26.3%	
	도	473	576	1049	
		41.6%	58.3%	49.4%	
경제적 특성					
가계부채여부	없다	537	375	912	18.559***
		47.2%	38.0%	42.9%	
	있다	600	613	1213	
		52.8%	62.0%	57.1%	
가계총소득(평균, SD)		36173.2(44989.8)	33659.8(32894.9)	34995.1(39790.6)	1.390
수발특성					
수발여부	수발함	65	76	141	3.330
		5.7%	7.7%	6.6%	
	수발안함	1072	912	1984	
		94.3%	92.3%	93.4%	
수발시간 ¹⁾ (평균, SD)		49.82(49.84)	31.03(29.41)	39.68(41.07)	2.772**

* p<.05, ** p<.01, *** p<.001

¹⁾ 수발시간은 수발제공자인 경우만 측정된 것임.

한편, 돌봄(수발)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2에서 주당 수발시간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 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노부모에 대해 일주일에 평균 28시간 이하(매일 평균 4시간 이하) 수발이나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주 평균 29-56시간(매일 평균 4시간초과~8시간이하)($b=-1.513, p<.001$), 57시간이상(매일 평균 8시간이상)($b=-.855, p<.001$) 수발을 제공하는 경우 중·고령층 여성이 취업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부모 수발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취업상태

	모형1(전체)				모형2(돌봄제공자)			
	b	S.E	Wald X ²	p	b	S.E	Wald X ²	p
절편	-1.636	.7048	5.390	*	4.800	1.4390	11.127	**
수발여부 (아니오)	.371	.1160	10.246	**				
수발시간 (28시간이하)								
29-56시간					-1.513	.2193	47.584	***
57시간이상					-.855	.0534	255.739	***
연령 (50대)	-.575	.0176	1063.580	***	.227	.4453	.261	
교육수준 (고졸이상)								
무학	1.400	.2502	31.281	***	1.887	.7148	6.966	**
초등학교졸	1.142	.0131	7588.064	***	.673	.6594	1.041	
중학교졸	.284	.0598	22.531	***	-.041	.2702	.024	
신체건강	.341	.0294	134.418	***	.334	.1995	2.810	
심리건강	-.091	.0941	.939		.157	.1324	1.400	
가구원수	-.376	.1305	8.297	**	.897	.4026	4.965	*
배우자유무 (무)	.008	.0094	.784		-.111	.0718	2.408	
거주지역 (도)								
서울시	-.647	.0380	289.545	***	-.746	.4755	2.459	
광역시	-.473	.1416	11.150	**	-1.780	.3272	29.582	***
가계총소득 (log)	.565	.0889	40.353	***	-.001	.6916	.000	
가계부채여부 (없음)	.062	.0725	.730		-.581	.1432	16.467	***

* $p<.05$, ** $p<.01$, *** $p<.001$

추가적으로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이,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와 거주지역 등이, 경제적 특성 중 가계총소득, 가계부채여부 등이 중·고령층 여성의 취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60대에 비해 50대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고학력에 비해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신체건강이 좋은 경우, 가계총소득이 높은 경우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수발)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전체대상자를 한 모형 1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연령, 신체건강, 가계총소득 등은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가계총소득보다는 가계부채여부가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3〉은 노부모 수발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미치는 영향을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살

펴본 것이다. <표 3>에서 제시된 모형은 비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임금노동,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로의 취업 가능성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수발여부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 임금노동 형태 또는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를 수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취업상태보다 임금노동자 또는 고용주/자영업으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무급가족종사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123.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부모 수발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

	임금노동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2.447	.765		-2.831	1.048		-4.972	1.074	
수발여부 (아니오)	.008	.284	1.008	.345	.320	1.413	.804	.272	2.235
연령 (50대)	-.949	.171	* .387	-.471	.203	.625	-.253	.170	.776
교육수준 (고졸이상)									
무학	1.285	.287	* 3.613	1.104	.330	3.017	1.899	.325	* 6.682
초등학교졸	.995	.167	* 2.705	.628	.213	1.874	1.764	.211	* 5.838
중학교졸	.296	.173	1.344	-.161	.237	.851	.691	.228	1.995
신체건강	.296	.080	* 1.344	.566	.108	* 1.762	.282	.088	1.326
심리건강	-.055	.084	.946	-.340	.110	.712	.026	.094	1.026
가구원수	-.617	.188	.539	-1.519	.211	* .219	2.084	.410	* 8.039
배우자유무 (무)	.057	.059	1.059	.028	.076	1.029	-.074	.069	.928
거주지역 (도지역)									
서울시	.192	.155	1.211	-1.080	.234	* .340	-1.747	.240	* .174
광역시	.130	.153	1.138	-.453	.193	.636	-1.266	.192	* .282
가계총소득 (log)	.362	.129	* 1.436	.719	.172	* 2.052	.758	.150	* 2.134
가계부채여부 (없음)	.055	.077	1.057	.153	.106	1.165	.026	.102	1.026
X ²	509.515**								
-2LL	3947.11								
Nagelkerke R ²	.263								

* p<.05, ** p<.01, *** p<.001

결과적으로 <표 2>와 <표 3>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부모수발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수발이 일정부분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고 가족내에서 노부모수발의 책임을 상호 나누어지면서 일정부분 근로를 통한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수발의 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단시간 수발에 비해 수발을 제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Green(1988)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부모에 대한 수발의 강도에 따라 경제활동참여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발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노인성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장시간의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수발을 위해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50~60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 2차 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중·고령층 여성 2,125명을 선별하고, 기술통계와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등과 같이 학력이 낮으며,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수가 보다 많으며,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특성의 경우, 가계부채가 있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발특성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가 수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수발 특성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부분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사상지위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경제활동의 참여는 노부모 수발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노부모 수발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Arber and Ginn(1990)이 제안한 돌봄제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의 다양한 유형 중 상대적으로 부모수발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노동시간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수발시간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의 차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가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장시간의 수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시간을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김미경·주재선, 2002)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고령층의 경우 연금제도와 같은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욕구 충족과 노부모 수발이라는 부양책임이 충돌할 시, 여성은 노부모의 수발욕구의 정도에 따라 수발욕구가 적을시에는 노동

시장 진입이 다소 용이하고 근로시간 조정이 보다 자유로운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의 취업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선택하는 반면, 수발욕구가 큰 경우에는 노부모의 수발을 위해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부양 책임 수행'을 선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정부분 우리나라 중·고령층 여성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참여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한 신현구(2008)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33.6%, 고용자 및 자영업주가 28.2%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52.0%가 임금근로자인 것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나 고용자 및 자영업주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에 비해 50대와 60대로 넘어갈수록 점차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70대에 이르러서는 70% 가까이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고용자 및 자영업주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재)취업시 임금노동자나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부담이 부여될 때 Arber and Ginn(199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보다는 무급노동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족의 일을 도와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족내에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직종으로의 근로 형태의 변화 통해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고 일정부분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지는 방향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가족내 노부모 수발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때, 가족내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노부모 수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가족간, 가족과 국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내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송다영·김미경(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돌봄 노동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이라는 인식을 재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로 네델란드나 프랑스 등에서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현금급여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석재은, 2006; Da Roit et al., 2007)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나 돌봄자 수당(Care's allowance)(Muller and Volkov, 2009)과 같이 비공식 가족 돌봄제공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신중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물론, 이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접지불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저해하거나 재가족화를 촉진시키지 않고 '노인 부양의 사회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비공식 가족 구성원을 돌봄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사

2)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 형태의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 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가 어려운 경우, 기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가족요양에 대한 보편적 급여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이윤경, 2010).

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은 가족내의 노부모 부양부담의 완화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가족내의 가처분 소득의 증진을 통해 중·고령층의 경제적 욕구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노인 부양의 사회화'의 다른 형태로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정책영역에서 아동 돌봄의 사회화의 한 방법으로 출산 및 양육휴가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져 온 반면, 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하였다. 이는 아동 돌봄에 비해 노인 돌봄이 비교적 오랜기간 수행해야할 과업이기 때문에 장기 유급휴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간 노부모를 돌보기 위한 돌봄 휴가는 돌봄 제공자에게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외국의 사례³⁾와 같이 노인 돌봄 휴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중 1,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노부모 부양부담이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인간의 인과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부모의 수발이후에 발생한 경제활동의 변화상태를 이후 공개된 패널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종단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2005년, 2007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제도적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종단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를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혜자, 2012, "최근 중고령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9월호: 17-28.
- 김교성,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 김미경·주재선, 2002,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연구』, 65: 181-210.
- 김미혜·최혜지, 2004, "직업훈련이 준고령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24(4): 215-233.
- 김수완, 2012, "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3) 프랑스의 경우 부모를 돌보기 위한 3개월의 무급 돌봄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장기적인 돌봄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소 몇 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돌봄 휴가가 가능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장애를 가진 노인을 돌보기 위해 3개월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Da Roit et al., 2007).

- 19(2): 69-97.
- 김지경·조유현, 2001,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6(2): 15-24.
- 김학주·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 라진구, 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숙,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24(1): 177-205.
- 박경숙, 2006, “남녀 고령층의 취업률과 은퇴동학”,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19-139.
- 박덕제·이원덕, 1998, 『노동경제』, 서울: 비봉출판.
- 박영란·강순화, 2008, “여성의 취업 및 취업상태 변화가 노인 돌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2: 99-122.
- 박진옥·정민수, 2008, 일반화회정방정식(GEE) 모형을 적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동과 건강 수준 차이 연구, 『사회연구』, 16: 77-103.
- 보건복지부,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서미경, 2012,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9(1): 199-226.
- 서병선·임찬영, 2004,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국제경제연구』, 10(1): 141-167.
- 석재은, 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73-302.
- 성지미·안주엽, 2006,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성지미·차은영, 2004,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경제논집』, 24(1): 97-124.
- 손정현·이영민, 2011, “중고령 여성인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18(4): 69-88.
- 송다영·김미경, 2003,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 『한국여성학』, 19(2): 145-176.
- 신현구,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주요 일자리 특성-고령화연구패널 직업력조사 자료 분석결과”, 『노동리뷰』, 9월호: 62-78.
- 신현구, 2014, “중고령 저임금근로 현황과 특성”, 『노동리뷰』, 3월호: 20-36.
- 엄동욱, 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국민노후 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3): 17-38.
- 윤지은·전혜정, 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743-759.
- 이민경,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희·황덕순, 1999,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경제학회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성용·방하남, 2009,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 29(2): 133-610.
- 이에스터, 2013, “성인자녀가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0(2): 133-163.
- 이윤경,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0월: 96-104.
- 이효수·류재술, 1990, “단층별 임금함수 추정과 단층간 임금격차 분해”, 『경제학연구』, 38(1): 53-96.
- 장지연, 200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신현구, 2008,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의 국가간 비교: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장지연·부

- 가칭·이혜정·신현구·이철의·장숙량·조성일·Berkman, L. F. 편,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43-84.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정경희, 2002,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 『보건복지포럼』, 66.
- 주은선·박진화, 2010, “연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37(1): 237-259.
- 최은영, 2011,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85-105.
- Agree, E., and Clark, R. L., 1991, “Labor force participation at older ages in the Western Pacific: A microeconomic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6: 413-429.
- Arber, S., and Ginn, J., 1990, “The meaning of informal care: Gender and the contribution of elderly people”, *Ageing and Society*, 10(4): 429-454.
- Berecki-Gisolf, J., Lucke, J., Hockey, R., and Dobson, A., 2008, “Transitions into informal caregiving and out of paid employment of women in their 50s”, *Social Science Medicine*, 67(1): 122-127.
- Carmichael, F., and Charles, S., 1998, “The labour market costs of community car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7(6): 747-765.
- Da Roit, B., Le Bihan, B., and Osterle, A., 2007, “Long-term care policies in Italy, Austria, and France: Variations in cash-for-care scheme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653-671.
- Dahlberg, L., Demark, S., and Bamba, C., 2007, “Age and gender of informal careers: A population-based study in the UK”,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5(5): 439-445.
- Evandrou, M., and Winter, D., 1993, “Informal cares in the labour market in Britain”, *Welfare State Program Discussion Paper*,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s and Related Disciplin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 Glendinning, C., 1992, *The Costs of Informal Care: Looking Inside the Household*, London: HMSO.
- Green, H., 1988, *Informal Carers*, OPCS Series GHS, No. 15, Supplement A, OPCS, London: HMSO.
- Henz, U., 2004, “The effects of informal care on paid-work participation in Great Britain: A lifecourse perspective”, *Ageing and Society*, 24: 851-880.
- Herzog, A. R., House, J. S., and Morgan, J. N., 1991, “Relation of work and retirement to health and well-being in older age”, *Psychology and Aging*, 6(2): 202-211.
- Martin, J., and Roberts, C., 1984, *Women and Employment: A Lifetime Perspective*,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ondon.
- McInnis-Dittrich, K., 2005, *Social Work with Elders: A Biopsychosoci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n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McLanahan, S. S., and Monson, R. A., 1990, *Caring for the Elderl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NSFH Working Paper 18,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uller, Cl., and Volkov, O., 2009, “Older women: Work and caregiving in conflict? A study of four countries”, *Social Work in Health Care*, 48: 665-695.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07, *Senior health: Depression*, <http://nihseniorhealth.gov/depression/aboutdepression/>

The Effect of the Parental Care Burden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Women

Choi, Young

(Chung-ang University)

Sim, Kyungsoo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purpo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arental care burden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women. For this, this study used 2,125 samples aged from 50 to 70 years old that were extracted from 1st and 2nd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In order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and Multi-nomin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the parental care burden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women. However, this effect was limited only to the employment to the unpaid family workers. In addition, the effect wa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ing time to the old parents. Based on that,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 works: middle aged and older women, labor force participation, employment status, parental care burden.

[논문 접수일 : 14. 07. 07, 심사일 : 14. 07. 17 게재 확정일 : 14. 08. 09]